

늘어난 수산재해 복구비용

굴채묘등 20품목 신설, 148품목으로 대상 확대

최 재 양 / 해양수산부 어업인복지과장

자연재해 피해현황

어업과 해양, 해양과 기상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매년 남동 및 북동무역풍이 열대성 저기압과 합류하여 대륙 쪽으로 이동하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을 형성하고 집중호우를 일으키고 있다. 이 태풍의 진로권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지리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태풍, 폭풍, 호우 등 각종 기상변화가 빈발하기 때문에 수산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지역적으로서, 이중 국고보조액 109억원, 지방비 24억원, 읍면 단 10년간의 피해발생이 연평균 260억원의 수산피해가 발생하여, 연평균 복구비도 294억원, 자부담 65억원이 소요되었다.

최근 10년간 피해현황 및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피해액	복 구 비 소 요 액				
		계	국 고	지방비	읍 자	면 담
'86	22,143	20,561	8,034	2,864	6,262	3,401
'87	67,345	86,766	30,585	9,678	28,214	18,289
'88	4,123	2,751	1,883	-	60	808
'89	24,726	25,679	9,866	670	9,469	5,674
'90	39,682	29,630	14,219	441	7,434	7,536
'91	18,351	17,134	8,739	1,174	3,336	3,885
'92	5,590	5,645	1,113	277	2,169	2,086
'93	18,846	13,404	3,105	349	6,666	3,284
'94	19,689	21,981	7,155	1,029	7,320	6,476
'95	39,563	70,276	24,372	7,871	24,439	13,234
평 균	26,006	29,382	10,943	2,435	9,537	6,467

피해복구상황

개 황

정부는 태풍, 폭풍 등 풍수해로부터 각종 시설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1967년도에 풍수해대책법을, 1975년도에는 민방위기본법을 제정하여 피해예방과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보다 적극적인 재해예방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1995년에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1996년 6월 21일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함으로써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제도적인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복구비 지원을 개선

해양을 농토삼아 수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연근해 영세어업인이 재난을 당하였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복구비 지원기준이 그들의 재활을 돕는데 보다 큰 활력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어업인에게는 복구비의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업인의 부담이 경감되고 복구 또한 용이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연근해어업인의 영세성과 수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94년도에 수산분야의 피해복구비 지원

수산증·양식시설의 규모와 수산생물의 입식규모에 대한 구분기준
(단위 : ha)

구 분	소 규모	중 규모	대 규모
	미만	이상~미만	이상
· 건홍식·수하연승식			
- 패 류	3	3 ~ 6	6
- 해조류	10	10 ~ 20	20
· 살포·투석식	10	10 ~ 20	20
· 가두리식	1	10 ~ 20	20
· 육상수조식 : 수면적	0.1	0.1~0.2	0.2
· 축제식	5	5 ~ 10	10
· 내수면조방양식장	0.33	0.33~0.5	0.5
· 내수면집약양식장	0.16	0.16	0.33

율을 개선하여, 40톤미만의 소규모어선과 신조가격이 6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어망, 어구가 파손, 유실되었을 경우는 당해년도 동일규모의 건조가격이 국고 15%, 지방비 5%, 융자 60%, 자부담 20%로 지원하고, 40톤이상의 대규모어선과 신조가격이 6천만원 이상의 대규모 어망·어구인 경우는 융자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지원하며, 수산물 증·양식시설이 파손·유실된 경우는 아래 규모에 따라, 소규모는 국고 40%, 지방비 10%, 융자 30%, 자부담 20%, 중규모는 국고 15%, 지방비 5%, 융자 60%, 자부담 20%, 대규모는 융자 70%, 자부담 30%의 비율로 지원하고, 수산생물 등의 입식비지원율은 소규모인 경우 국고

50%, 지방비 10%, 융자 30%, 자부담 10%, 대규모는 국고 20%, 지방비 10%, 융자 5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접지원 이외에 50% 이상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은 2년분의 영어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가 감면되고 6개월분의 중·고등학교 수업료가 면제되고 지방세도 감면하여 간접적인 지원혜택도 주고 있다.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개선

1996년 6월 21일 개정 공포된 재해복구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규정(대통령 제 15032호)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1995년 11월 22일 수산청장이 고시한 “재해로인한패류

와해조류등의양식종묘대복구 비기준"을 폐지하여, "해양수산분야재해복구비용산정"으로 통합 제정, 고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128개 품목에서 굴채묘 등 20개 품목을 신설하여 148개 품목으로 확대고시함으로써, 그동안 새

로운 양식기술을 개발하여 양식업을 경영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숙원사항인 가리비양식, 육상어류종묘생산 등이 적절한 피해복구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현실 복구비단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41개 품목은 3.7%

인상고시함으로써 피해어업인들의 복구비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다. 앞으로도 재해복구비용산정 기준단가가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품종에 대하여는 계속 현실화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회 인상고시 품목 : 41개

품 목	단 위	현 단 가 ('94고시)	인상단가 ('96고시)	인 상 륜 (%)
□ 수산증·양식시설				
굴 (연승수하식)	줄 (100m)	353천원	366천원	3.7
홍합 (")	" (")	316 "	328 "	"
가리비채묘장 (")	" (")	2,020 "	2,095 "	"
진주조개 (")	" (")	481 "	499 "	"
김 (지주망홍식)	책(1.8×40m)	214 "	222 "	"
김 (부류망홍식)	"(")	126 "	131 "	"
미역 (연승수하식)	줄 (100m)	80 "	83 "	"
다시마 (")	" (")	196 "	203 "	3.6
돛 (")	" (")	95 "	99 "	3.7
참모자반 (")	" (")	75 "	78 "	"
어류양식 (육상수조식)	평 (3.3㎡)	400 "	415 "	"
우렁챙이 (연승수하식)	줄 (100m)	469 "	486 "	"
내수면양어장	m ³ (철근con'c)	98,430 원	102,070 원	"
내수면가두리양식장	조(5m×5m×4칸)	2,650,500 원	2,748,570 원	"
□ 어망·어구				
꽁 치 (유자망)	폭 (동 해)	51,500 원	35,400 원	"
오징어 (")	" (")	40,170 "	41,660 "	"
멸 치 (")	" (남 해)	354,990 "	368,120 "	"
삼 치 (")	" (남서해)	69,830 "	72,410 "	"
참조기 (")	" (서 해)	43,250 "	44,850 "	"
학꽁치 (")	" (동남해)	53,900 "	55,890 "	"
방 어 (")	" (동 해)	128,700 "	133,460 "	"
명 태 (")	폭 (동 해)	68,310 "	70,840 "	"
양미리 (")	" (")	154,000 "	159,700 "	"
꽃 게 (")	" (서 해)	23,460 "	24,330 "	"
청 어 (")	" (동 해)	83,900 "	87,000 "	"
붉은대게 (통 발)	개 (")	6,060 "	6,280 "	"

품 목	단 위	현 단 가 ('94고시)	인상단가 ('96고시)	인 상 륜 (%)
붕장어 (통 발)	개 (전해역)	4,590 원	4,760 원	3.7
골뱅이 (")	" (동 해)	4,600 "	4,770 "	"
꽃 게 (")	" (서 해)	2,300 "	2,385 "	"
물매기 (")	" (남 해)	6,320 "	6,550 "	"
명태주냥	바스켓(동 해)	2,960 "	3,070 "	"
넙치 "	" (남 해)	22,990 "	23,840 "	"
농어 "	" (서 해)	31,090 "	32,240 "	"
붕장어 "	" (남 해)	7,380 "	7,650 "	"
옥돔 "	" (")	16,950 "	17,580 "	"
문어 "	" (동 해)	9,400 "	9,750 "	"
□ 어 선				
동력어선 (강선)	톤 당	6,490 "	6,730 "	"
" (목선)	"	6,390 "	6,630 "	"
" (F.R.P)	"	8,140 "	8,440 "	"
무동력어선 (목선)	"	3,230 "	3,350 "	"
" (F.R.P)	"	4,660 "	4,830 "	"

금회 신규고시 품목 : 20개

맺음말

품 목	단 위	'96 고시단가
굴채묘 (연승수하식)	줄(100m)	300 천원
" (간이수하식)	대(25m×2m)	139 "
피조개채묘 (연승수하식)	줄(100m)	230 "
가리비 (귀매달이식)	" (")	2,595 "
어류종묘생산(육상수조식)	평(3.3m ²)	173 "
새 우 (축제식)	ha	14,393 "
은 어	작은고기 4~5cm	210 원
"	큰 고기	420 "
미꾸리	작은고기 4~5cm	30 "
"	큰 고기	60 "
대모망(大)	통(남해)	52,376 천원
개대망(")	" (")	53,655 "
" (中)	" (")	48,051 "
" (小)	" (")	46,041 "
낙 망(大)	" (")	53,166 "
각 망(")	" (")	43,409 "
소대망(")	" (")	44,235 "
" (中)	" (")	35,637 "
죽방염(大)	" (")	34,284 "
가자미주냥	바스켓(동해)	9,800 원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에 따른 홍수, 지진, 폭풍, 폭설 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 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에도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매년 여름철이 되면 3~4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인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해에 대하여 정부의 피해예방과 복구비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어선과 증·양식 시설, 어망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들의 사전 예방대책을 스스로 강구하고 피해확대를 방지할 때만이 수산재해의 예방과 복구대책 업무가 한층더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